

석유정제시설능력 현실화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제시설 처리능력 차이(실능력/허가능력 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 실처리 능력을 검증하여 석유정제시설능력을 지난 6월 24일 자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허가용량을 초과한 정제시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로 간주되어,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나, 동시설이 국내석유수요 급증으로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 정제시설능력 조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그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금번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석유정제 시설을 현실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액

- 과징금은 금번에 문제가된 '90년이후 가동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 법상과징금인 80백만원을 부과하되
 - 위반정도별로 법상 가감비율인 20%를 가감·부과(위반율 : 雙龍132%, 京仁100%, 油公60%)
 - '90년 이전에 가동된 시설의 경우, 개·보수 및 운전기술향상에 따른 정제능력증대 추면외에 이미 3년이상 가동된 것인바, 금번 제재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른 과징금총액은 240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석유사업기금에 '92. 6. 29일까지 납부토록 고지
 - 雙龍 96백만원, 京仁 80백만원, 油公 64백만원

〈정제시설 처리능력차이 발생사유에 대한 조사결과〉

◦ 설계회사의 견해

- 정유사는 허가용량으로 설계를 의뢰하였으나,
- 일반적으로 장치산업시설 설계시 여유율을 주고, 석유제품 생산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Flooding Factor를 0.75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최대 1까지 올릴 수 있으며,
- 다른 시설과는 달리 석유정제시설의 경우, 설계기준 원유보다 중질의 원유를 사용시 처리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임.

◦ 정유사의 소명도 동일한 내용으로

- 이같은 설계발주용량과 실처리능력차이는 장치산업의 경우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 이는 금번에 문제가된 시설중 하나는 그 설계도면을 이태리의 Foster Wheeler사로부터 구입,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다는 의견임.

◦ 이같은 국제적 관행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석유사업법상 정제시설능력이 수요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정제시설능력은 일반적 관행인 『표준용량』보다는 『최대용량』으로 판단함이 타당시되고
- 장치산업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허가용량을 60~132% 초과하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인 것으로 판단됨.

2. 석유정제시설 증설허가 및 변경허가

- 최근의 석유수요급증으로 석유정제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
 - 기존시설중 '90년 전에 가동된 시설은 설계여유율 및 운전방법 개선에 따른 실처리능력 증대 분에 대하여 증설허가
 - 최근 가동된 ('90년 이후) 시설은 변경허가
 - 금번에 신규증설을 허가한 湖南精油의 경우는 정제시설능력차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시 설계여유율을 10% 부여하고, 실정제능력은 건설완료와 동시에 시운전을 통한 실처리능력을 허가범위내에서 인정키 위하여 200천 BPSD±10%로 증설허가
 - 금번 석유정제시설능력 조정후에도 정제시설능력은 추가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3. 석유정제시설 사후관리 강화

- 현안과 같은 사례발생예방을 위해 『정제시설 허가

제도』를 보완

- 정제시설 허가용량은 석유사업법상 허가기준이 『최대수요의 130% 이내』인 점을 감안, 최대처리능력으로 명확히 하고
- 석유정제시설 신·증설허가는 허가용량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건부허가(설계여유율 10% 이내 부여, 설계내용의 전문가 심의 및 준공검사조건부 허가, 정제능력은 시운전 결과로 확정)
-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능력이상의 원유처리 금지
- 신·증설시설의 준공검사결과 잠정정제능력을 초과할 경우, 원유/석유제품 수출입제한, 석유사업법상의 별적적용등으로 제재
- 설계가 착수되지 않은 極東精油의 기허가분(100천 B/D, '89. 7. 3 허가)을 포함, 금번 湖油증설 분부터 적용

〈정제시설능력 조정의 기본방향〉

- 정제시설능력 현실화
-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정제시설을 건설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제재
 - 석유사업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8천만원, 위반정도에 따라 20%이내 가감)
- 위반사항이 없는 정유사에 대한 『증설우선권』 부여로 허가관리의 공정성유지
- 정제시설 허가와 관련한 제도보완으로 동일사례 재발방지

〈금번 증설 허가내역〉

(단위 : 천 BPSD)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기존시설증설	280→345	380	60→75	60→93	60→110	840→1,003
최근설치 시설변경	150→240	—	100→200	100→232	—	350→672
신규증설	—	200 [최대220] [최소180]	—	—	—	200 [최대220] [최소180]
計	430→585	380 [560~ → 600]	160→275	160→325	60→110	1,190 [1,855] → 1,895]

〈석유수요와 정제능력 비교〉

(단위 : 천BPSD)

	1993	1994	1995	1996
수요의 130%	1,988	2,102	2,207	2,278
정제능력	1,675	1,775 (극동100 기허가)	1,955~1,995 (호유증설완료)	좌동
차이	313	327	212~252	283~323

※ BPSD : Barrel per Stream day로서 B/D에 1,058을 승하여 산출됨.